



제 43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신설〉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37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2. 27.

다. 회 부 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조회의 경우는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이거나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금융회사 본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조세외 수입의 체납금 발생에 대하여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없어 체납금 징수에 차질을 겪는 바, 원활한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
·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
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융회사등의 본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illegible]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조제1항1)**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범위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 이 중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조세를 체납한 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경우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를 체납한 자의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 외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이 가능함.

○ 참고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조세’를 체납한 경우만 해당²⁾되며, 이때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의미함³⁾.

□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이외의 방법으로 얻는 수입에는 국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이 있음.

○ 국세외수입이란 국가가 조세 이외의 방법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등 95개의 종류가 있음.

2) 법제처는 법령해석(07-0312, 2007. 10. 12.)을 통해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있어서의 “체납자”는 “조세체납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

3) 조세(租稅)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 또는 경제·사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권에 기초하여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제주체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급부(給付)를 의미(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2026. 참조)

[그림 1] 국세외수입 종류

국세외수입 종류 및 안내

벌금 및 과료	과징금	과태료	몰수금 및 추징금	법정부담금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관유물대여료	기타잡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미국판매수입
변상금	위약금	부산물기타판매수입료	징계부과금	피고용자분담금	고용주부담금
항공항만수입	그 외				

자료: 국세외수입포탈(재정경제부)

-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⁴⁾ 중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의미하며, 경상적 수입(사용료 수입 등), 임시적 수입(재산매각수입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등) 등으로 구분됨.

[그림 2] 지방세외수입 종류



자료: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행정안전부)

4)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지방채로 구성됨(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5. 참조)

□ 조세외수입의 징수 실적을 보면, 국세외수입의 경우 2023년 229.7조원, 2024년 258.0조원, 2025년 263.3조원,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2023년 29.6조원, 2024년 32.4조원, 2025년 36.4조원으로 국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 모두 매년 징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1] 국세외수입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

단위: 조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세외수입 징수액	221.3	229.7	258.0	263.3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29.7	29.6	32.4	36.4 ⁵⁾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및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행정안전부)

○ 국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의 체납누계액의 경우에도 2021년 각각 14.1조원, 3.2조원에서 2024년 16.2조원, 3.9조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2] 국세외수입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누계액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세외수입 체납누계액	14.1	14.5	15.9	16.2
지방세외수입 체납누계액	3.2	3.5	3.7	3.9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및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행정안전부)

5) 2025년 수치의 경우 최종 예산액을 의미.

□ 개정안은 이러한 조세외수입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체납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
부담금 등의 체납자’로 규정하고, 제공 요청 목적을 해당 체납자의 ‘재
산조회’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본점에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현행법 제4조제2항⁶⁾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도록 하되, ① 법관의 명령 또는 영장에 따른 경우, ②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③ 조세 체납
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
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
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
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
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본점)에 요구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조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특정점포가 아닌 금융회사등의 본점에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과 같이 조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조세와 유사하게 재산조사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조세외수입의 체납 실적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방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⁷⁾의 징수와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률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간접강제수단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할 경우 이러한 체납처분 절차 및 간접강제수단을 통하여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7)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지방정부에 통보⁸⁾하였는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 정보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제도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국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근거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22대국회에서 발의되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⁹⁾은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개선하고 국가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며, 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간접강제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임.

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2026. 4. 23.

9) 의안번호 제2217125호, 2026. 2. 26. 발의

- 국세청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국세 외수입 체납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국민편의성을 증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¹⁰⁾.
-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26. 7. 8.부터 전국단위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¹¹⁾하여 연말까지 6개월간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확인을 실시할 예정임.
- 현재 심사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중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주체의 일원화’ 내용의 반영 여부에 따라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청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음.
- 현재 국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관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 법률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할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게 됨.
-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주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동 제정안이 반영될 경우 체납자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요청은 국세청이 일괄하여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임.

10) 국세청,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2026. 3. 11.) 자료 등 참조

1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하며, 3,000명 규모의 실태확인원(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였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현재 심사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전에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징수 담당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밀보호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

○ 아울러, 개정안에서 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통일적인 체납처분 및 간접강제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회 결과 납부 능력이 확인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통일된 체납처분 및 간접강제수단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확인된 은닉 재산 등이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어려울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국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처분 절차 및 간접강제 수단 등은 통일적인 법규정 없이 각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통일적인 체납처분 절차 및 간접강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 둘째, 개정안에서는 조세외수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외수입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조세외수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조세외수입의 범위에는 행정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금 성격의 과징금, 과태료 등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법적 제재의 일종인 벌금·과료·형사추징금 등이나, 국가가 계약 상대방으로서 일반 민사채권과 실질이 유사한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도 존재함.
- 벌금·과료·형사추징금 등은 형벌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검사의 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가 「형사소송법」 12)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¹³⁾ 등 별도의 제재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행정청의 일방적 공권력 행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등과 달리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성격의 조세외수입의 경우 그 실질이 민사채권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 채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12)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3)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국세외수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국세외수입을 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위약금, 징계부과금 및 환수금 등, ② 국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 ③ 그 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양곡관리사업 수입, 조달사업 수입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 중 유형①의 국세외수입에 대하여 가장 강한 징수·관리 절차가 적용되고, 유형③의 국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간접강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 관리절차만 적용되는 등 유형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¹⁴⁾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절차 및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4조의2에서는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인에게 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회의 경우 이러한 통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제4조의2¹⁵⁾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조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통보 유예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에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음.

- 조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의 경우 조세 체납자와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공사실 통보 대상에 개정안의 내용(제7호의2)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6
